

제 1143 호  
1985. 7. 2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  
편집인 : 공 도 관 이 광 우  
전화 : 731-6111-3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35-3337

# 시 보

## 차 례

◎ 고 시	
제 495 호 : 도시계획사업 ( 시장 ) 시행허가 .....	2
제 496 호 : 도시계획사업 ( 주차장 ) 시행허가변경 ( 정정 ) .....	3
제 497 호 :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변경결정고시 .....	3
◎ 공 고	
제 425 호 : KS 표시허가최소공고 .....	4
◎ 사 령	

연 월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1387

**고 시**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5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4 호('84. 11.29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 749 호('84. 12.11)로 지적승인되고 같은공고 제 31 호('85.1.18)로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우리시 관내 마포구 노고산동 57-1 일대에 소매시장 신축공사는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토지소유자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비고
마포구 노고산동	57-1,2	대	1,428.5 중 1,417.6	서울특별시서대문구 창천동 29-101 윤경수	없 음	
마포구 노고산동	57-3	대	190.1	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1-892, 대림아파트 2동 107호 조종효	없 음	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(생략)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25

서울특별시 장

사업 개요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-1, 2, 3 호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시장), 소매시장신축
3. 사업의 규모  
 매지면적 : 1,607.7 ㎡  
 건축면적 : 800.8 ㎡  
 연건평 : 11,971.4 ㎡
4.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57-1호 크리스탈쇼핑㈜ 대표이사 이종웅
5. 사업의 착수, 준공 예정년월일 : 허가일 - 1985.12.3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96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  
허가변경 (정정)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0 번지 일대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1 호 ('85.7.20) 로 시행허가 변경된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(정정)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 . 7. 25  
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1.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사업 시행기간 변경 (정정)

착오 : 1979 년 3 월 2 일 -  
1985 년 8 월 26 일  
정정 : 1979 년 3 월 2 일 -  
1985 년 9 월 26 일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97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와 같은법 제 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 . 7. 25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 (㎡)	비 고
당초	학 교	성동구구의동 4-2 일대	11,967	
변경	"	"	11,398	감 569 ㎡

○ 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**공 고**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25 호

KS 표시허가취소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 취소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5.7.25  
서울특별시 장

1. 허가번호 : 제 659 호
2. 허가일자 : 1965.2.18
3. 업체명 : 애경유지공업(주)
4. 소재지 : 구로구 구로동 108-1
5. 대표자 : 장 영 신
6. 규격번호 : KSM 2707
7. 규격명 : 정재 글리세린
8. 처분사유 : 허가증 자진반납
9. 처분내용 : KS 표시허가취소

**사 령**

◎1985년 7월 25일자

령제 271 호

성 명	발 명 사 함	현 부 서	직 급
김 동 일	판악구부청장 직대	감사담당관	서 기 관
이 용 선	감사담당관	성동구청무국장	'

서울특별시 장